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나22465 판결 [전속계약금 정산청구]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희동

피고, 피항소인 1. C 주식회사

2. D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차태강

변 론 종 결 2021. 9. 30.

판 결 선 고 2021. 11. 4.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가단506313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8줄 이하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였는데, 그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만 한다)”를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였다가 2021. 3. 5.자 회생절차 폐지로 인하여 다시 원고 주식회사 A가 당사자가 되었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형, 판사 구광현, 판사 최호식